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백혜련·정성호·윤종군

백승아 · 염태영 · 김한규

박희승 • 이병진 • 김영진
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5항에"로 한다.

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신변안전조치) ① ~ ④	제13조(신변안전조치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
	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
	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	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
	고자등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
	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
	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	<u>⑥</u> 제1항 및 제5항에
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